

석사학위논문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김혜원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경희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and Services
for the Proactive Disclosure: Focused on the Staffs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혜 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경희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and Services
for the Proactive Disclosure: Focused on the Staffs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김혜원

김혜원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김 혜 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관련 규정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회수율은 62.5%(25명)였다.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는 첫째,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의 공개 정보 범위선정 기준, 둘째,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선정 기준, 셋째,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와 관련된 명칭의 사용과 원문정보로의 링크연결 상황, 검색 제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각 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선정 기준과 공표목록의 선정 기준을 「정보공개법」,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지침」, 업무 및 부서별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명칭 또한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링크를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연결의 오류도 일부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사전정보공개 제도 및 업무에 관한 부분, 사전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부분,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정보공개 업무 및 제도 측면에서는 현재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대다수는 기록연구직이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기록연구직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사전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선정하는 기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은 매우 적었다. 특히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의 선정 기준을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명(4%)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1년에 최소 2회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9명(36%)만이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 전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6명(24%)에 불과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검색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보공개 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기록연구직은 현용기록의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각 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의 과정 및 업무 분담에 대해서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전정보공개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이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공개정보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전정보공개목록과 정보공개목록을 통합하고, 이용자가 공개정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기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검색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정보공개법, 사전정보공개, 행정정보공표, 사전정보공개 운영,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2.1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변천	4
2.1.1 도입 배경	4
2.1.2 2003년 「정보공개지침」 제5조 신설	6
2.1.3 2004년 「정보공개법」 제7조 신설	9
2.1.4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신설	11
2.1.5 2013년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신설	15
2.2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사례	17
2.2.1 국내 사례	17
2.2.2 국외 사례	22
2.3 선행연구	26
III.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29
3.1 운영 지침 및 절차	29
3.2 운영 현황	32
3.2.1 조사 방법	32
3.2.2 조사 결과	33

IV.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 분석	41
4.1 조사 방법 및 내용	41
4.2 운영 및 서비스 분석 결과	42
4.2.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2
4.2.2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인식	44
4.2.3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	50
4.2.4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57
4.3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64
4.3.1 직급에 따른 인식 비교	64
4.3.2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 비교	66
V.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69
5.1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측면	69
5.2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서비스 측면	72
VI. 결 론	74
참고문헌	76
부 록	79
ABSTRACT	94

표 목 차

〈표 1〉 「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7
〈표 2〉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9
〈표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12
〈표 4〉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15
〈표 5〉 알리오의 공개정보 항목	19
〈표 6〉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	29
〈표 7〉 조사대상 기관	32
〈표 8〉 운영규정의 공개정보 범위선정 기준	34
〈표 9〉 운영규정의 목록제공 기준	35
〈표 10〉 홈페이지의 목록제공 기준	36
〈표 11〉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전정보공개제도 명칭	37
〈표 12〉 설문지 구성	42
〈표 13〉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3
〈표 14〉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44
〈표 15〉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비중	45
〈표 16〉 사전정보공개 업무 주체에 대한 인식	45
〈표 17〉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	46
〈표 18〉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46
〈표 19〉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	47
〈표 20〉 사전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47
〈표 21〉 사전정보공개 운영의 적절성	48
〈표 22〉 사전정보공개 개선방안	49
〈표 23〉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게시기준 고시 여부	50
〈표 24〉 공개대상 범위 선정 방법	51
〈표 25〉 공개대상 범위 선정의 주체에 대한 인식	51
〈표 26〉 사전공개 정보의 최종 선별 담당자	52
〈표 2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선정기준	53

〈표 28〉 정보공개 주기 및 시기 선정기준	54
〈표 29〉 목록 갱신주기	54
〈표 30〉 사전정보공개 갱신주기 제시여부	55
〈표 31〉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횟수	55
〈표 32〉 정보공개모니터단의 필요성	56
〈표 33〉 이용자의 사전정보공개 활용 정도	57
〈표 34〉 사전정보공개 이용 편리성	58
〈표 35〉 검색의 필요성	58
〈표 36〉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검색 필요성	59
〈표 37〉 이용자 요구 파악의 중요성	60
〈표 38〉 이용자 요구 파악 경로	60
〈표 39〉 이용자 요구 반영 여부	61
〈표 40〉 직급에 따른 인식 비교	65
〈표 41〉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 비교	67

그 립 목 차

〈그림 1〉	정보공개 목록: 국토교통부	16
〈그림 2〉	사전정보공개 키워드 검색 및 결과(1): 국토교통부	18
〈그림 3〉	행정정보공표 제공단계: 서울시	21
〈그림 4〉	행정정보공표 키워드 검색 및 결과: 서울시	22
〈그림 5〉	DATA.GOV의 검색 화면	23
〈그림 6〉	DATA.GOV.UK의 검색 화면	24
〈그림 7〉	주제별 사전정보공개 목록: 기상청	36
〈그림 8〉	사전정보공개 키워드 검색 및 결과(2): 국토교통부	38
〈그림 9〉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개 통합검색 결과	39

부 록 목 차

〈부록 1〉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운영규정」	79
〈부록 2〉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80
〈부록 3〉	관세청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	81
〈부록 4〉	설문지	86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민들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일상생활이나 기관의 업무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감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한 이 후에 공공기관이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둘째, 청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공공기관이 미리 공개할 정보를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는 주로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제공하는 수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공개와 공유를 강조하는 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청구에 의한 방식의 불편함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정보공개제도가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4년에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은 행정업무의 결과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

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 8월 「정보공개법」 제8조 2가 신설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에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문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3.0 정신을 「정보공개법」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점차 사전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의 설명책임성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공개되고 있는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홈페이지 상에서의 키워드 검색이나 원문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운영 및 서비스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는 사전정보검색 메뉴가 있으나 실제로 검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홈페이지 내용분석,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 과정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사전에 공개할 정보의 목록 공표 여부,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제공 형식, 사전정보공개 접근 방법 등 총 3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0명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 6일까지 전화, 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업무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변천

2.1.1 도입 배경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도입의 필요성은 1990년대 들어서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그리고 1994년 3월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법안 심의와 공청회, 당정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표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였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가 제도화되었지만, 「정보공개법」에는 주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기존의 정보공개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만 제공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의 경우 26,338건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192,295건으로 1998년에 비해 7배가 넘게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4). 그러나 증가하는 청구 수에 비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높아졌다.

기존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15일 뒤에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되었으며, 한차례 15일 간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 35일이라는 정보공개기간이 소요되었다. 청구에서 정보공개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소요되면서 이용자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전진한 2007).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비공개’와 ‘부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가 나타나 이용자들은 불복신청이나

소송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김유승, 전진한 2011). 이처럼 이용자의 청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동적인 방식의 정보공개제도이므로 기관의 중요정보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미리 제공하는 능동적인 정보공개 방식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전진한 2007). 당시 중요한 개정요구 사항은 사전에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03년 「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이하 「정보공개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를 통해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그 다음해인 2004년 「정보공개지침」 제5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즉 정보공개제도가 공개청구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보장하며, 이용자들은 국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다.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고시한 후에 원문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첫째, 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임진수 2005).

또한 사전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정부 3.0과 연관이 있다.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3.0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3.0 정책의 3대 전략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중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사용하는 용어로는 크게 ‘사전정보공개’와 ‘행정정보공표’ 2가지로 구분된다. ‘행정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사전정보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행정안전부 2011)에서 이 제도에 대한 명칭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정보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용어를 주로 ‘사전정보공개’외에도 ‘행정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목록’, ‘사전공표대상목록’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정보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에 대한 설명은 조항에 따라 ‘행정정보공표’를 사용하였다.

사전정보공개제도는 2003년 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정보공개지침」 제5조에 ‘행정정보의 공표’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2004년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법에 도입되었다. 이 후 2011년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신설되면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좀 더 구체화 되었다. 또한 2013년 「정보공개법」 제8조의 2에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3년 국무총리훈령에 처음 도입된 ‘행정정보공표’에서부터 올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까지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2 2003년 「정보공개지침」 제5조 신설

「정보공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442호)은 각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법제처 제정이유). 「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는 제1항에서 공개대상 범위 및 게시기준과 예외정보,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결제 및 언론기관을 통한 공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공개청구가 있지 않아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을 미리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정보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 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공개 제1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준은 크게 6개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관한 정보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제5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기관의 중장기 기본계획, 예산현황 및 결산,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둘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이다(제5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50억 이상 투입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양시설, 복지시설 건립관련 자료가 포함된다.

셋째,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이다(제5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주요정책/사업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이 포함된다.

넷째,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

외하는 정보이다(제5조 제1항 제4호). 예를 들면 각 기관의 청·차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다섯째,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이다(제5조 제1항 제5호).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책고객 설문결과,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여섯째,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한 정보이다(제5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민편의 및 알권리를 위한 정보로 반복하여 청구되는 정보, 인사사항에 관한 정보, 법령정보, 각종 홍보자료가 포함된다.

제2항에서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1호·제2호에 포함되는 정보는 결재 후 바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의 정보들은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여 수시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제1항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정보공개법」에 행정정보공표의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 각 기관에서는 정보 공개지침을 기준으로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게 되었다.

「정보공개지침」 제5조의 조항은 이 후 「정보공개법」에 제7조 ‘행정정보공표의 등’이 신설될 때 바탕이 되었다.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행정감사를 위한 정보, 그 밖에 기관 장이 공개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보고서·회의록 등의 정보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2003년에 제정된 「정보공개지침」은 2012년 사문화되어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해 폐지되었다.

2.1.3 2004년 「정보공개법」 제7조 신설

「정보공개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사전정보공개 관련 조항은 2004년 개정을 통하여 제7조 ‘행정정보공표의 등’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 「정보공개법」개정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정보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행정정보의 공개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 빠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과정을 위한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등의 사항들을 통하여 보다 확대된 정보공개제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신설되면서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제7조는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개대상 범위 및 게시기준과 예외정보를 명시한 1항과 그 외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되는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첫째,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둘째, 사전정보 공개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정보, 셋째,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공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표 2 참고).

〈표 2〉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공개 제1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준은 크게 4개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관한 정보로 기관의 기본계획, 건강 관련 정보, 환경관련 정보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제7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경제정책 업무에 속하는 ‘경제정책방향’, 정책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물가관계회의 개최결과’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둘째, 공사에 관한 정보로 대규모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계약 및 사업에 관한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제7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면, 국방부의 경우 계약관련 업무에 속하는 ‘공사계약현황’, 군시설사업 업무에 속하는 ‘국방시설사업집행계획’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셋째, 행정감사에 관한 정보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나 공공기관의 재정과 관련된 예산, 결산, 채권 및 재정운영상황 등이 포함된다(제7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예산집행현황 업무에 속하는 ‘예산개요’, ‘결산개요’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넷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로 이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 기관의 핵심 업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정보 등을 선정하여 공개한다(제7조 제1항 제4호).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책홍보 업무와 관련된 ‘보도자료’, 정보목록 업무와 관련된 ‘보존기록물 공개재분류결과’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사전정보공개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도 있다.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9조에 해당하는 정보란 ① 다른 법률(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등)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재판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 ⑤ 계약, 감사, 규제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⑥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⑦ 경영·영업상에 비밀에 관한 정보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

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공개정보의 게시기준 선정은 다음과 같다. 공개할 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선정할 때는 각 기관의 정보 생산부서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정하여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전정보공개의 목적이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므로, 비록 제1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제2항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정보공개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들은 법을 통하여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 중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관의 사업 중 설명의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이용자의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할 정보의 대상을 정했지만, 공개 기준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공개대상정보의 선정에 차이가 생겨나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11년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신설하게 되었다.

2.1.4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신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의 4가지 기준으로 사전정보공개가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생겼다.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추상적이며 공개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전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법제처 2011). 이에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신설하여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보공개를 제공하는 방법 및 종합목록의 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을 기반으로 6가지 유형의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서 공개대상정보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한 것을 보다 세분하고 대상 주체를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공개 제1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준은 크게 6개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표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로 식품, 환경, 복지 등의 포함된 행정정보이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토지가격 및 특성 관련 정보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 의료, 교통, 전기, 통신 등이 포함된 행정정보이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위의 항목과는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로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노인가구 관련 업무인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공통주택 관리비 부과 내역 관련 업무인 ‘아파트 관리비’ 등의 정보를 선정하고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포함된다.

셋째, 계약이나 재정관련 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계약이나 재정관련 정보이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른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가계약관련 업무로 ‘국가계약예규’, ‘철도차량 구매계획’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에 따른 예산, 기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재무결산보고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채권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포함된다.

넷째,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진 질의 및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생산된 정보이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기관 자체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행정안전부 2011).

다섯째,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이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예산 및 집행내역 등의 정보와 해외출장비에 관련

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7항 제1호 제3호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중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유형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이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장관 연설문, 기고문’, ‘정보목록’, ‘기록관리기준표’, ‘청렴활동 우수사례’ 등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개할 정보의 기준을 6가지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즉 기존의 「정보공개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기준이 추상적이며 기관마다 정보선정의 차이가 보였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식품, 환경, 복지,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대상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제2항은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가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를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쉬운 접근과 간행물 발간을 통한 다양한 접근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항은 임의규정으로 종합목록 발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즉, 안전행정부 장관이 각 기관에서 공표한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목록을 작성한 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보의 접근점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보다 공공기관의 홍보성 자료나 단순 내부통계 중심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기관별로 공개 수준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2.1.5 2013년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신설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범위를 선정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정보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2013년 8월 6일 「정보공개법」 제8조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를 신설하여 2013년 11월 7일 부터 시행되었다. 즉 미리 공개범위를 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정보만을 사전에 공개하던 것에서 정보가 생산될 때 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모두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8조의 2는 원문공개 의무 기관, 대상정보, 공개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첫째, 원문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둘째, 대상정보는 전자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이다. 셋째, 공개방법은 이용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표 4 참고).

〈표 4〉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공개대상정보는 정보목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였고, 정보목록에서 ‘공개’로 분류된 경우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원문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제8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그림 1〉과 같이 정보목록에서 공개여부가 ‘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과제카드	제목	담당자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목록 공개
2013/10/01	간선도로과-1920	사무	10월 연가사용계획		3년	비공개	Y
2013/10/01	간선도로과-1921	예산집행	국도건설 2014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른 지시		5년	공개	Y
2013/10/01	간선도로과-1922	업무협조	2013년도 제2차 행정제도 개선 수용과제에 대한 홍보 참고자료 제출		3년	비공개	Y
2013/10/01	간선도로과-1923	감사 수감 및 결과 조치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전말서 제출		5년	공개	Y
2013/10/01	간선도로과-1924	타부서 각종 사업계획 검토처리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에 대한 의견회신		5년	공개	Y
2013/10/01	간선도로과-1925	타부서 각종 사업계획 검토처리	고성 이당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제출		5년	비공개	Y
2013/10/01	간선도로과-1926	타부서 각종 사업계획 검토처리	음성 유촌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서 검토회신		5년	비공개	Y

〈그림 1〉 정보공개 목록: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대상 정보의 열람은 201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준에 포함되는 정보만을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하였다면,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에 한하여 모두 사전에 공개한다는 의의가 있다. 원문공개가 확대되면 정보목록에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인한 뒤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98년 「정보공개법」의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제도는 단순 정보공개청구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거쳐 앞으로는 공개로 구분된 정보의 경우는 모두 원문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궁금한 정보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원문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행정업무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전정보공개의 사례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내외 공공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사전정보공개의 운영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사전공개하는 알리오(ALIO), 서울시의 행정정보공표를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로는 미국의 DATA.GOV와 영국의 DATA.GOV.UK를 살펴보았다.

2.2.1 국내 사례

1) 국토교통부의 사전정보공개

국토교통부는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해야 되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서 ‘정부3.0 정보공개’ 메뉴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로 접근할 수 있다. 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6가지 범위인 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2) 국민의 일상관련 정보, 3)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정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정보, 4) 국회·지방의회,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관련 정보, 5) 예산집행 6) 기타 공공기관 사무 관련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속해있는 ‘항공교통센터’, ‘대한주택보증’,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소속기관의 사전정보공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전정보공개 메뉴에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고속도로’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국민의 일상관련 정보’에 속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현황’, ‘민자고속도로 현황’ 등과 ‘예산집행’에 속하는 ‘도로보수현황-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보수현황’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었다. 이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표항목 및 내용, 업무명 등을 알지 못해도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HOME > 정부3.0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개정보 검색 고속도로 **검색**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국민의 일상관련 정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정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정보
국회·지방의회,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관련 정보	예산집행	기타 공공기관 사무 관련 정보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전 행정정보 공표

공표항목	공표내용	공표시기, 주기	공표방법	공표부서 및 전화
국민의 일상관련 정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현황	사업개요, 추진현황, 통행료 현황	수시	홈페이지	
민자 고속도로 현황	노선연장, 사업비, 공사기간 등	10월 (연1회)	홈페이지	
구간거리표(고속 ·일반국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구간거리표	5월 (연1회)	홈페이지	
예산집행				
도로보수현황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보수현황	5월 (연1회)	홈페이지	

〈그림 2〉 사전정보공개 키워드 검색 및 결과(1): 국토교통부

2) 알리오(ALIO)

알리오(ALIO)는 2005년 12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착수되었으며, 2006년 12월부터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34개 항목, 120여개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 30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준정부기관 87개, ‘한국투자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기타공공기관 178개의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에서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34개 정보는 크게 1) 일반현황, 2) 기관 운영, 3) 주요산업 및 경영성과, 4) 대내외 평가, 5) 공지사향으로 구분된다 (표 5 참고).

〈표 5〉 알리오의 공개정보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현황	일반현황
기관운영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현황 및 유연근무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기관장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정보, 노동조합 관리현황, 취업규칙
주요산업 및 경영성과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현황, 주요사업, 공공기관 투자집행현황,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비용 추계, 납세정보현황
대내외 평가	국회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경영실적 평가정보, 경영평가 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의 직무수행 실적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공지사항	창의경영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입찰정보, 연구보고서, 기타 정보공개

(출처: 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첫째, 일반현황에는 기관의 소개와 기능 및 역할, 기관연혁 등의 사항을 제공한다. 둘째, 기관 운영과 관련된 신규채용현황, 임원 현황 및 연봉, 출장정보 등을 제공한다. 셋째, 기관에서 시행되는 투자 및 지출현황, 주요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기관의 업무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 내부 감사 등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그 외의 일반적인 연구보고서 및 경영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알리오는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서 더 확대하여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경영개선신고센터’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경영정보신고센터’는 이용자가 직접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력운영 사항, 불공정한 인사운영 사항, 윤리경영 위반 등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위에 속하는 사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하여 감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서울시의 행정정보공표

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해야 되는 공공기관이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사전정보를 위하여 2013년 1월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전부개정을 계획하였다.

사전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기존의 64종에서 270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이용자에게 밀접한 정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많았던 건과 예산집행과 관련된 행정감시정보 등을 확대목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공표목록을 사전에 명시했으나, 공표항목의 확대 및 변경 등의 변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표정보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의 정보공개조례, 규칙, 매뉴얼로 공표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즉 조례에는 14개의 공통항목, 규칙에는 270종 공개항목, 매뉴얼에는 각 항목별 444개 세부업무로 분류하여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공표목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3).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327종 492개 업무로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시의 사전정보공개는 ‘정보소통광장’(www.opengov.seoul.go.kr)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에서 생산·보유하는 행정정보를 이용자에게 쉽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로 2012년 8월에 개설하였다. 메뉴의 명칭은 ‘행정정보공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분류는 공통업무, 복지·어르신·장애인, 여성·가족·보육·아동·청소년, 경제·일자리, 안전·소방·민방위, 주택·도시계획·부동산, 환경·공원·상수도, 문화관광·체육·디자인, 건강·식품위생, 교통, 세금·재정·계약, 기

획·감사·교육·정보기획·마을공동체, 총 12개로 구분된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은 사전정보공개 제공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1차 기준인 ‘일자리’를 선택하면, 이에 속하는 2차 분류기준으로 일자리에 속하는 정보의 목록이 제공된다. 2차 분류는 공표항목, 공표부서,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형태의 게시 기준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 행정정보공표

공통업무

복지/아르산/장애인

여성/가족/보육/아동/청소년

경제/일자리

안전/소방/민방위

주택/도시계획/부동산

환경/공원/상수도

문화관광/체육/디자인

건강/식품위생

교통

세금/재정/계약

기획/감사/교육/정보기획/마을공동체

경제, 일자리

경제, 일자리 분류는 9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분류체계 선택

1차 분류체계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2차 분류체계의 공표대상업무를 선택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산업지원	산업통상진흥원센터별 입주현황	소비자 지원	일자리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지원	투자유치	

일자리 분류체계 선택

공표대상업무를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실적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 (PDF)	일자리정책과
기술교육원 만족도조사결과	기술교육원 경영평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성과급 지급내역	연 1회	11월	자료첨부 (PDF)	일자리정책과

〈그림 3〉 행정정보공표 제공단계: 서울시

또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여 브라우징 검색을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로 접근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 뿐 아니라, <그림 4>와 같이 ‘행정정보공표’ 메뉴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였다. 전담부서의 신설로 정보공개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제공과 지속적인 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공표

서울시에서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공표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정보공개가 투명행정과 참여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표 확대 현황 : 64종(~2012.12월) -> 270종(2013.1월) -> 327종(2013.8월)[현재]**

[공표항목 전체보기](#)

~
 일자리 창출

번호	제목	공표부서	공표일	조회수
5	일자리창출 추진현황 및 실적 (2013년 2분기)	경제진흥실 - 일자리정책과	2013-07-16	93
4	일자리창출 추진현황 및 실적 (2013.1분기)	경제진흥실 - 일자리정책과	2013-05-21	104

〈그림 4〉 행정정보공표 키워드 검색 및 결과: 서울시

2.2.2 국외 사례

1) 미국의 DATA.GOV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5월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에서 운영하는 DATA.GOV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저장소를 구현하였다(신범섭 2010). 이용자들은 DATA.GOV을 통하여 각각의 정부기관에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곳에서 수월하게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DATA.GOV에서는 데이터 목록(data Catalog)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 직접 검색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브라우징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총 7가지, 데이터세트 유형(dataset Type), 태그(tags), 데이터 형태(formats), 커뮤니티(communities), 기관 유형(organization types), 기관명(organization), 커뮤니티 범주(community categories)에 따라 이용자는 검색이 가능하다. 첫째, 데이터세트 유형(dataset Type)에는 지역과 관련된 정보(geospatial)의 유형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태그(tags)는 온도와 관련된 정보

(temperature), 물리적 정보(physical), 물의 깊이와 관련된 정보(water depth), 날씨와 관련된 정보(weather)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정하고 있다. 셋째, 데이터 형태(formats)은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HTML, ZIP, XML, TX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넷째, 커뮤니티(communities)는 정보가 포함되는 그룹을 의미하며, 안전과 관련된 정보(safety),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energy), 농업과 관련된 정보(agriculture) 등을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기관 유형(organization Types)에 따라 연방정부의 정보(federal government), 대학교의 정보(university), 주 정부의 정보(state Governmen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째, 기관명(organization)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각 기관을 정리하고 있다. 이용자는 원하는 기관만의 정보를 한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커뮤니티 범주(category)로 환경(environment), 전기(electricity), 에너지(total energy), 음식(food) 등이 구분되어 제공된다. 이와 같이 정보에 접근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검색의 제한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이용자는 원하는 기관을 선택한 후, 정보의 유형이 XLS인 경우를 선택하고, 정보의 그룹을 에너지(energy)로 선택해서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DATA.GOV의 경우는 무엇을 공개했는지 목록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검색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점, 브라우징, 제한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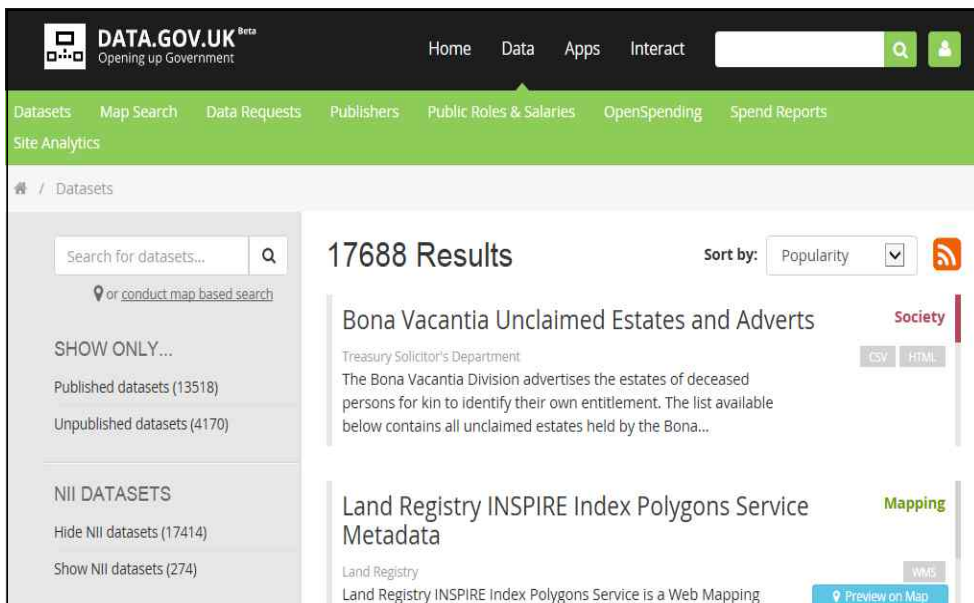


<그림 5> DATA.GOV의 검색 화면

2) 영국의 DATA.GOV.UK

2008년 영국 국립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 TNA)는 공공기록의 재활용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2010년 1월부터 DATA.GOV.UK 사이트를 구축하여 공공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DATA.GOV.UK에서는 미국의 DATA.GOV와 같이 다양한 검색의 제한점을 통해 데이터세트(datasets)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데이터세트를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다. 화면 왼쪽에는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show only, 국가정보인프라 데이터세트(NII datasets), 라이선스(licence), 주제(theme), 자료의 유형(resource format), 출판사(publisher), 공개스코어(openness score), 총 7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6> DATA.GOV.UK의 검색화면

첫째, Show Only는 데이터세트(datasets)가 출판물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정보인프라 데이터세트(NII datasets)는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속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분에서 검색할 수 있다. 셋째, 라이선스(licence)에서는 열

린정부의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ce)가 있는 경우, 열린정보의 라이선스(non-open government licence)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다. 넷째, 주제(theme)에 따라 환경(environment), 건강(health), 정부(government), 사회(society) 등으로 나누어서 검색할 수 있다. 다섯째, 자료의 유형(resource format)에 따라 XLS, HTML, PDF, RDF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째, 출판사(Publisher)에서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공개스코어(openness score)에서는 정보의 공개순위를 평점으로 처리해서 이용자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정보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가 브라우징 검색,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면 그 정보의 기본적인 정보인 출판지, 정보사용의 빈도, 소재지, 언어, 대체정보명, DATA.GOV.UK의 접수일자, 업데이트 주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DATA.GOV.UK의 경우도 DATA.GOV와 같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목록으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검색의 제한점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2.3 선행 연구

사전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첫 번째로 사전정보공개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임진수(2005)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현황을 토대로 공개해야 되는 정보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사전공표지침마련, 공개범위기재, 공개주기기재, 공개시기기재, 공개방법기재, 의무적 명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공개분류체계의 확립과 사전정보공표 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김유승(2010)은 공공기관의 사전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해외의 공공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이트 사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국내의 프리즘, 알리오, 내고장알림 등 사전 공개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공개제도는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조직적 측면을 통하여 정보의 온라인 공개,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향하는 쌍방향적 소통과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주장하였다.

신범섭(2010)은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의 정책을 직접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개 단계에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제도를 주장하였다. 또한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제도의 제정 및 개정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에서 사전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연구이다. 오영미(2000)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법」 도입의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 제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확한 제도를 해석하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다양한 홍보방안으로 운영방안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김정화(2003)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사항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및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의 소극적 공개, 사전정보공개 범위의 미흡함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담요원 배치 및 전문성의 미흡, 제도에 대한 책임 불확실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기관의 사전정보공개를 확대, 담당자 인력배치,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양정봉(200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정보공개 적용기관의 범위, 비공개대상정보 범주, 정보목록 작성의 문제점 등을 통해 정보목록 제공의 의무화 및 정보목록의 표준(안)제시, 행정정보공표의 의무화 및 컨설팅제도 도입, 공익심사제도를 포함한 공개재분류 절차 마련, 정보공개 독립 위원회 설치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안은정(2013)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과 태도, 업무, 기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개와 비공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사전공표목록을 의무화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사전공표목록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로 전진한(2007)은 참여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토대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정책에 대해서는 제도, 온라인 정책, 오프라인 정책, 소비자 만족도로 나누어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프라 부족, 법 개정의 필요성, 청구인의 높아진 수준으로 인한 정보공개의 만족도 부족 등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 개정,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민영(2006)은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제도가 실무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를 법리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확장된 영역에서 실무적 개선을 한다면 정보공개/비공개를 떠나 다양한 정보의 활용 및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는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주였으며,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사전정보공개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하나인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Ⅲ.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3.1 운영 지침 및 절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의무적으로 제 공해야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절차가 제시 되고 있지 않다. 대신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가 비 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은 2011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하였으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개념 및 연혁, 정보공개 의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인 사전정보공개 및 정보목록 작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과정,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 한 업무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6>은 『정보공개운영매뉴얼』 에서 제시된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

업무 영역		세부 사항
사전정보공개 기준 결정	공개정보 대상선정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포함되는 정보를 선정
	정보공개 주가시기 결정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방법 결정	-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전자파일 공개가 어려울 경우, 출력물로 공개
사전정보공개 실시	정보공개 기준 고시	- 공개정보 대상, 공개 주가시기, 방법을 사전에 기 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목록으로 수록 - 수록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홈페이지 서비스	- 규정 및 지침의 고시대로 웹사이트에 제공함 -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의 메뉴구성을 따름
	홈페이지 유지·관리	- 원문 정보로 링크 연결의 오류 확인 - 주기적으로 정보 적합성 확인
이용자 요구파악	이용자의 요구파악	-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요구사항 접수
	피드백	- 이용자의 요구사항 수렴 및 개선

〈표 6〉에서처럼 사전정보공개 업무과정은 크게 사전정보공개를 준비하는 과정, 사전정보공개 제공과정, 이용자 요구파악, 3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전정보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는지에 대해 선정한다. 첫 번째, 정보공개 대상 선정이다. 각 기관은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대규모예산 사업정보,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그 밖에 선정 정보에 해당되는 공개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관련 정보, 국민의 일상관련 정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정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정보, 감사관련 정보, 예산집행, 기타 사무관련 정보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보공개 주기·시기의 선정이다. 각 기관은 정보공개대상을 선정하였으면, 그 정보를 언제 공개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 때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 정보공개 제공 방법이다. 정보공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한다. 위조의 우려가 있는 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전자파일의 공개가 어려울 경우, 출력물을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고 비치 목록과 장소를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전정보공개 기준이 모두 결정되면 이에 따라 사전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업무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결정한 사전정보공개 게시기준 즉,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를 사전에 정하여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 등에 공표목록을 수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두 번째,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한다.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드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를 연

결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의 구성은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의 권장사항에 따라 메뉴 구성과 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메뉴의 구성은 상위메뉴로 ‘정보공개’, 하위메뉴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링크 연결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이메일과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두 번째,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사전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전정보공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용자의 요구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모니터단’은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은 사전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기관별로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용자를 선정하여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모니터단’은 중앙행정기관 40개, 지자체 225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93.3%의 구성현황을 보이고 있다(안정행정부, 2012).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업무과정은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개할 정보를 선정한 후 그 정보의 생산시점에 따라 주기·시기를 선정하며, 형태에 따라 전자파일 혹은 출력물을 이용하여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기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게 된다. 홈페이지에 제공된 사전정보공개 목록과 정보의 링크를 통하여 이용자는 정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 대하여 적합한 정보가 공개됐는지, 게시기준에 따라 공개됐는지 등의 지속적인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3.2 운영 현황

3.2.1 조사 방법

사전정보공개의 운영 절차 및 지침을 3.1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8월 사이에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중에서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고 있는 40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표 7 참고).

〈표 7〉 조사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부 (14)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처 (3)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 (16)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원 (1)	감사원
위원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현황 분석은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정보공개법」에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 선정과 관련된 조항 및 공개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영 절차를 토대로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정보공개 운영 절차 중 게시기준 선정과 사전정보공개

제공을 범주로 삼았다.

첫째,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공개정보 범위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둘째,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공개하는 정보를 게시기준인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사전에 알리고, 공표목록의 기준을 확인하였다. 셋째,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기준을 확인하였다. 특히 위의 3가지 조사항목은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에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공개대상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외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와 관련된 명칭의 사용과 링크연결의 제공, 검색 제공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였다.

3.2.2 조사 결과

1) 각 기관 운영규정의 공개정보 범위선정 및 목록제공 기준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첫째 공개의 구체적 범위, 둘째 공개의 주기 및 시기, 셋째 공개의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각 기관은 그 기관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사전정보 공개의 범위 기준을 밝히고 게시 기준을 미리 정하여 사전정보목록을 고시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운영규정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운영규정이 검색되지 않는 기관 1군데를 제외하고 39개 기관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제공하고 있었다.

먼저 기관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무엇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였으며,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인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8>에 따르면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선정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6가지를 기준으로 한 기관은 40개 중 4개 기관에 불과하였다(부록 1 참고). 즉 2011년에 개정된 시행령을 운영규정에 반영한 기관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

항의 4가지 기준으로 하는 기관이 5개,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의 5가지 기준으로 하는 기관이 10개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범위선정의 기준이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기관에 포함되는 정보에 맞게 그 범위를 조절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록 2>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제1항에는 공개정보의 범위를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위원회 의결사항,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각종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 내용,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에 포함되는 범위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범위선정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사전정보공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기관은 10개로 나타났다.

〈표 8〉 운영규정의 공개정보 범위선정 기준

범위선정의 기준	기관 수	비고
• 시행령 제4조 제1항	4	〈부록 1〉
• 법 제7조 제1항	5	
•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	10	
• 기타	8	〈부록 2〉

이처럼 각 기관에서는 가장 최근의 개정사항인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선정하는 기관, 2003년도에 제정된 정보 공개지침의 기준으로 범위를 선정하는 기관 등 그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공개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고시할 때, 목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목록을 고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목록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목록을 제공하는 기관은 21명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21명 중 목록 구성의 기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선,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목록을 제공하는 기관은 없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은 8개, 폐지된 국무총리훈령인 「정보공개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은 7개로

나타났다. 또한 목록의 구성을 업무별 혹은 부서별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이 3개로 나타났다(부록 3 참고). 업무별 혹은 부서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먼저 사전정보공개 관련 조항에 범위선정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정보들을 업무별 혹은 부서별로 나누어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업무별로 정보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운영규정의 목록제공 기준

목록제공의 기준	기관 수	비고
• 시행령 제4조 제1항 기준	0	
• 법 제7조 제1항 기준	8	
•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 기준	7	
• 업무별 / 부서별	3	〈부록 3〉
• 기타	3	

2)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 목록기준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토대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운영규정의 고시사항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전정보공개를 목록을 통해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1개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기관은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이 4개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은 13개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별 혹은 부서별로 제공하는 기관이 12개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홈페이지에서의 목록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고).

〈표 10〉 홈페이지의 목록제공 기준

범위선정의 기준	기관 수	비고
• 시행령 제4조 제1항 기준	4	
• 법 제7조 제1항 기준	13	
•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 기준	6	
• 업무별 / 부서별	12	〈그림 7〉
• 기타	4	

〈그림 7〉은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를 주제별로 제공하고 있는 기상청의 경우이다. 공개목록의 기준을 주제별로 기상정보, 기후정보, 국정감사정보, 재정·계약정보, 공공사무정보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업무	목록	세부내용	공개주기	공개시기	경로	담당부서
기상특보	기상특보 발표현황	특보현황 통보문	발표시	발표시	홈 > 날씨 > 특보예보 > 특보 > 특보현황	영남예보관 (131)

〈그림 7〉 주제별 사전정보공개 목록: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록의 기준이 운영규정에서 사전에 고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기관은 40개 기관 중 절반인 20개로 나타났다. 그 외의 10개 기관은 운영규정과 다르게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운영규정에 범위선정 및 목록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범위선정 기준 및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10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를 목록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제공하는 기관이 절반으로 나타나 업무상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 홈페이지 서비스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전정보공개 명칭의 통일성과 링크 및 검색이 잘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였다.

첫째,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명칭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명칭을 확인한 결과 ‘사전정보공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25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전정보공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5개, ‘사전공표대상목록’, ‘사전공표정보’는 각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전정보공표목록’, ‘사전공개’, ‘사전정보공개기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11 참고). 이처럼 사전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를 가진 명칭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명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들이 접근할 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표 11〉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전정보공개제도 명칭

명칭	기관 수
• 사전정보공개	25
• 사전정보공표	5
• 사전공표대상목록	2
• 사전공표정보	2
• 기타	6

둘째,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할 때 목록에서 링크를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0개 기관 중 37개 기관이 링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링크를 이용하지 않고, 목록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를 다시 검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나타났다.

또한 링크 연결이 게시기준인 주기·시기를 준수하여 제공하는지 조사하였다. 각 기관은 사전에 게시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링크연결이 게시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40개 기관이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기관장의 업무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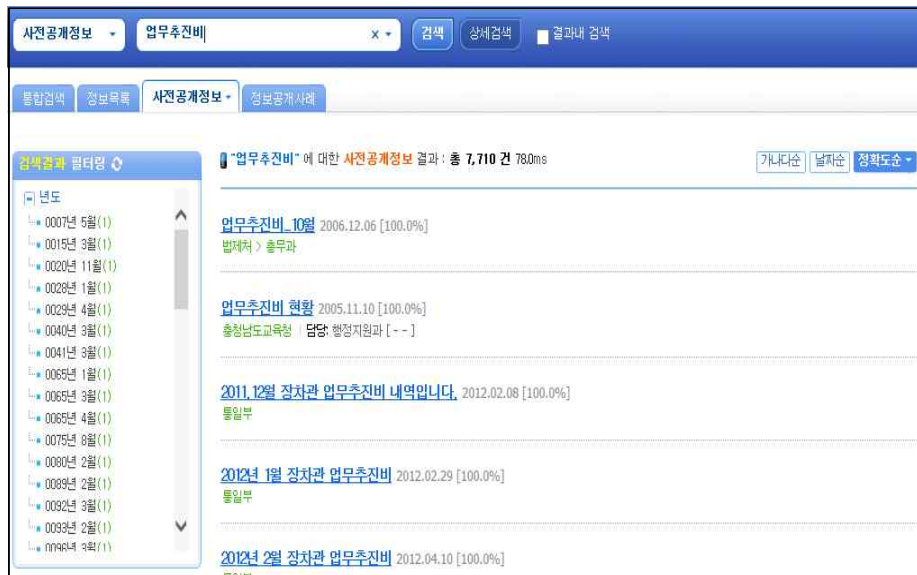
비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전에 고시한 주기·시기를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25개로 나타났으며, 15개 기관은 주기·시기와 다르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정보로의 연결, 링크된 페이지에서 추가 검색 필요, 주기·시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목록과 정보목록이 한 페이지에 있어서 추가검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었으며, 조사당시 2013년 8월이므로 2013년 7월의 자료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10월 자료로 연결이 되어서 연결 경로가 옳지 않았고, 추가로 검색이 필요한 기관도 있었다.

둘째,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의 키워드검색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기관 홈페이지에서 브라우징 검색을 통한 사전정보공개의 접근은 공통적으로 제공되었다. 다만 키워드검색을 통해서 사전정보공개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 기관 내 통합검색을 이용하더라도 정확한 명칭을 검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럴 경우 관련 기사와 정보 등 기관의 모든 자료 및 정보가 검색결과로 같이 나오게 되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전정보공개의 검색 항목을 따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그림 8>과 같이 사전정보공개의 메뉴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었다. 사전정보공개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면 정보의 접근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사전정보공개 키워드 검색 및 결과(2): 국토교통부

첫째, ‘정보공개시스템’서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키워드로 하였을 때 최신정보가 2012년이며, 월마다 1개의 문서만이 검색되었다. 정보공개시스템과 각 기관의 사전정보공개 목록 간의 연동이 2012년 10월부터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참고).



〈그림 9〉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개 통합검색 결과

4) 문제점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각 기관의 정보공개운영규정 및 지침에 사전정보공개 관련 조항은 대부분 있었으나 공개정보의 범위선정 및 게시기준에 따른 목록의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범위선정 기준은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지침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는 기관이 적게 나타났다.

둘째,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목록의 기준도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운영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기관은 절반정도로 나타나 실제 홈페이지와 운

영규정이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명칭 사용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의미는 동일하나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를 이용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키워드 검색이 어렵다.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정보로의 접근이 어렵다. 또한 링크연결이 게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종합적으로 2011년에 신설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범위의 기준을 반영하는 기관이 상당수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의 범위선정 기준과 홈페이지에서의 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일관성 있게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기관마다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검색방법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

IV.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 분석

4.1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업무 및 제도 운영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중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하고 있는 40개 기관(2013년 7월 기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 6일까지 전화, 우편,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하여 웹 설문 사이트를 개설하여 40명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알리고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였다. 전자우편으로 웹 설문 사이트를 알려주고 설문참여를 요청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25부로 62.5%의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보완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2명과 전화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영역에 따라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직급, 근무기간, 성별, 연령에 따른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차이검증이 이루어졌다.

설문내용은 4개의 분야로 이루어졌다(표 12 참고).

첫째, 사전정보공개 업무 및 제도와 관련된 분야이다. 기관에서 사전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과 중요도, 사전정보공개 업무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또한 제도의 필요성, 관심도, 중요성 등의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분야이다.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문항이다. 이용자가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설문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근무기간, 직책,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의 병행여부를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12〉 설문지 구성

조사영역	항목	문항 수
업무 / 제도	•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역할	1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3
	•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이해도, 관심도, 필요성, 적절성	4
	• 사전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운영현황	• 게시기준 선정 및 범위 선정	5
	• 주기 및 시기 선정 과정	1
	• 목록 갱신 여부	2
	•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및 필요성	2
서비스	• 사전정보공개의 활용성	1
	• 이용의 편리성	1
	• 검색의 필요성	2
	• 이용자 요구파악	3
기초자료조사	• 성별, 연령, 직책, 근무기간, 업무병행	5
계		31

4.2 운영 및 서비스 분석 결과

4.2.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와 같다. 전체응답자 중에서 성별은 여성 14명(56%), 남성 11명(44%)으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3명(12%)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2명(48%), 40대 이상 12명(48%)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8년 이상이 9명(36%)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1-2년 7명(28%), 7-8년 6명(24%), 3-6년 3명(12%)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기록연구직이 18명(72%), 행정직은 7명(28%)으로 기록연구직이 약 2.5배 높게 나타나,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주로 기록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는 18명(72%), 병행하지 않은 경우는 27명(8%)으로 나타나,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책을

묻는 응답자 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연구직의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행정직의 경우는 정보공개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성별	여성	14(56.0)
	남성	11(44.0)
연령	20대	1(4.0)
	30대	12(48.0)
	40대	12(48.0)
근무기간	1-2년	7(28.0)
	3-6년	3(12.0)
	7-8년	6(24.0)
	8년 이상	9(36.0)
직급	기록연구직	18(72.0)
	행정직	7(28.0)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 병행여부	병행함	18(72.0)
	병행하지 않음	7(28.0)
합계		25(100.0)

4.2.2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역할

사전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이용자의 요구수령이 25명 중 23명(92%)이 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대한 훈령 및 예규작성이 21명(84%),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20명(80%), 링크 정보의 적합성 체크가 18명(72%)으로 공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정보 공개의 범위 선정과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정보공개 제공이 각 13명(52%), 정보 공개의 방법 선정과 원문 정보로의 링크 연결이 12명(48%), 정보 공개의 범위 선정 후 해당 정보의 선별이 11명(44%), 정보 공개의 주기 및 시기 선정은 5명(20%)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업무의 비율을 보였다. 즉 이용자의 요구수령 업무,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링크 정보의 적합성 체크와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공통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

구분	응답자 수(%)
이용자 요구 수령	23(92.0)
훈령 및 예규 작성	21(84.0)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지속적 업데이트	20(80.0)
링크정보의 적합성 체크	18(72.0)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정보공개 제공	13(52.0)
정보공개의 범위 선정	13(52.0)
정보공개의 방법 선정	12(48.0)
원문 정보의 링크 연결	12(48.0)
정보공개의 범위 선정 후 해당 정보의 선별	11(44.0)
정보공개의 주기 및 시기 선정	5(20.0)

*다중응답

2) 업무의 비중

설문응답자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업무 중에서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업무 중 11~20%를 차지한다는 응답자가 7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21~30%와 40%가 각 6명(24%), 31~40%가 5명(20%), 10% 이하가 1명(4%)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고). 즉 응답기관의 19명(72%)이 전체 업무 중 11~40% 범위에서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1% 이상은 6명(24%)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비중

구분	응답자 수(%)
41% 이상	6(24.0)
31~40%	5(20.0)
21~30%	6(24.0)
11~20%	7(28.0)
10% 이하	1(4.0)
합계	25(100.0)

3)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식

사전정보공개제도가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행정직이 업무 주체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이 분담하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9명(36%)으로 나타났으며, 기록연구직이 업무 담당자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표 16 참고). 즉 기록연구직이라는 응답보다는 행정직이 업무의 담당자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16〉 사전정보공개 업무 주체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자 수(%)
행정직	10(40.0)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	9(36.0)
기록연구직	1(4.0)
기타	5(20.0)
합계	25(100.0)

4)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업무에서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기관의 14명(56%)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9명(36%)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표 17 참고).

〈표 17〉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9(36.0)
그렇다	14(56.0)
보통이다	2(8.0)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5)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3명(52%), 그렇다는 응답이 12명(48%)으로 나타나 응답자 모두 사전정보공개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8 참고).

〈표 18〉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13(52.0)
그렇다	12(48.0)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6)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8%),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40%)으로 나타났다. 전체 22명(88%)이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고).

〈표 19〉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도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10(40.0)
그렇다	12(48.0)
보통이다	3(12.0)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7) 사전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이용자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13명(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명(32%)으로 나타나 전체 21명(84%)이 사전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0 참고).

〈표 20〉 사전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8(32.0)
그렇다	13(52.0)
보통이다	4(16.0)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8)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적절성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해당 기관의 사전정보공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잘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명(3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명(12%)이었다. 즉, 긍정적인 응답이 52%로 과반수를 조금 넘었으며 부정적인 응답도 일부 있었다(표 21 참고).

앞서 <표 17>의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 및 <표 20>의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설문응답자의 92%와 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이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21〉 사전정보공개 운영의 적절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2(8.0)
그렇다	11(44.0)
보통이다	9(36.0)
그렇지 않다	3(12.0)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9) 사전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사전정보공개제도가 개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보공개 담당기관 신설과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전정보공개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11명(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및 정보생산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10명(24%), 사전정보공개의 홍보 확대가 6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담당기관 신설과 사전정보공개 범위 구체화가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2 참고). 기타 의견으로는 원문 공개확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기관 간부들의 관심과 지원,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의 추가 인터뷰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업무에 정보공개업무가 포함되는 규정이 모호하며, 이에 따라 업무의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정보공개 담당기관이 신설되어 정보공개업무를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개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관마다 제공되는 범위가 다르게 제공된다. 이에 공개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시켜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사전정보공개 개선방안

구분	응답자 수(%)
정보공개 전담부서 신설	11(44.0)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의 사전정보공개 범위 구체화	11(44.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및 정보생산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10(40.0)
사전정보공개의 홍보 확대	6(24.0)
기타	4(16.0)

*다중응답

4.2.3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목록 고시 여부

각 기관에서 내부 정보공개운영지침 및 규정에 사전정보공개를 범위, 주기·시기 방법의 게시기준을 맞추어 고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내부 지침 및 규정에 사전정보공개를 공개범위, 주기·시기,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명(76%)으로 나타났다(표 23 참고).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추가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게시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 및 규정에 게시기준을 공개하는 일이 번거로우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침 및 규정에 고시하는 것보다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23〉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게시기준 고시 여부

구분	응답자 수(%)
고시한다	19(76.0)
고시하지 않는다	6(24.0)
합계	25(100.0)

2) 공개대상 범위 선정

그 중 공개대상의 정보의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선정한다는 응답이 13명(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먼저 범위를 선정한 후 생산 부서와 의견을 조율한다는 응답이 10명(40%)이었다. 그러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단독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선정하거나 내부의 운영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기타로는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직접 선정한 후 각 부서에 통지한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24 참고).

〈표 24〉 공개대상 범위 선정 방법

구분	응답자 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13(52.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먼저 범위 선정 후, 부서와의 의견 조율	10(40.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선정	-
기관의 기존 정보공개 운영 지침 및 규정을 따름	-
기타	2(8.0)
합계	25(100.0)

또한 공개대상 범위 선정을 누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응답이 14명(56%)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 생산자가 범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1명(4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범위를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표 25 참고). 이것은 사전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단독으로 공개대상범위를 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생산부서가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해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부서의 담당자가 정보의 특성과 생산주기 및 시기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범위 선정을 담당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공개대상 범위 선정 방법과 〈표 25〉 공개대상 범위 선정의 주체 인식을 비교해 보면, 실제 운영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선정한다는 응답이 13명(5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각 부서 생산자가 선정해야 된다는 응답이 11명(44%)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보였다.

〈표 25〉 공개대상 범위 선정의 주체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자 수(%)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14(56.0)
각 부서 생산자	11(44.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
기타	-
합계	25(100.0)

3) 사전공개 정보의 최종 선별의 담당자

공개대상의 범위를 선정한 후 사전에 공개할 정보를 최종 선정하는 담당자는 누구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부서의 정보 생산자가 선별하는 경우는 16명(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를 선별한다는 응답은 7명(28%)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각 부서의 정보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사전 공개할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26 참고).

또한 <표 24> 공개대상 범위 선정 방법에서 사전공개 정보의 선정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13명(52%)이었으며, <표 26>에서 사전 공개할 정보를 각 부서의 정보 생산자가 정한다는 응답이 16명(64%)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공개 정보를 선정하고 최종 공개할 정보를 선별하는 주체가 주로 각 부서의 정보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6〉 사전공개 정보의 최종 선별 담당자

구분	응답자 수(%)
각 부서의 정보 생산자	16(64.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7(28.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2(8.0)
합계	25(100.0)

4)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의 선정기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의 경우 각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조사하였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선정한다는 응답이 15명(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의 핵심 업무 관련 정보를 선정한다는 응답은 8명(32%)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선정한다는 응답은 1명(4%)에 그쳤다(표 27 참고).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선정할 때 청구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빈도가 높은 정보가 곧,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의 빈도수에 의해 정보를 선정한다는 응답은 1명(4%)에 그쳤다.

〈표 2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선정기준

구분	응답자 수(%)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정보	15(60.0)
기관의 핵심 업무 관련 정보	8(32.0)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	1(4.0)
기타	1(4.0)
합계	25(100.0)

5) 정보공개 주기 및 시기 선정기준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기 및 시기의 선정 기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개 정보의 생산시기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응답이 21명(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는 응답과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2명(8%), 1명(4%)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공개 정보의 생산시기를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볼 수 있다(표 28 참고). 또한 주기 및 시기를 선정하는 주체는 정보를 생산하는 각 부서 담당자가 주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는 정보공개 주기 및 시기를 선정할 때 정보의 생산 주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공개 정보의 생산시기를 기준으로 주기 및 시기를 선정한다는 응답이 21명(84%)으로 나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정보공개 주기 및 시기 선정기준

구분	응답자 수(%)
공개 정보의 생산시기 기준	21(84.0)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따라 임의로 정함	2(8.0)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1(4.0)
기타	1(4.0)
합계	25(100.0)

6) 사전정보공개 목록 갱신주기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갱신 주기를 조사한 결과 분기별로 목록을 갱신한다는 응답이 11명(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 년마다 목록을 갱신한다는 응답이 8명(32%), 반년마다 목록을 갱신한다는 응답이 5명(20%)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갱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9 참고).

〈표 29〉 목록 갱신주기

구분	응답자 수(%)
분기별	11(44.0)
반 년	5(20.0)
일 년	8(32.0)
일 년 이상	1(4.0)
합계	25(100.0)

7) 규정 및 지침에 사전정보공개 갱신주기 제시여부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사전정보공개의 갱신주기를 명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갱신주기를 정하여 제시한다는 응답이 14명(56%), 제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명(44%)으로 나타났다. 갱신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사전에 정해놓는 것 보다는 갱신 사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30 참고).

또한 갱신주기를 제시한다고 응답한 14기관의 경우 분기별로 목록을 갱신하는 경우와 일 년마다 갱신하는 경우가 각각 5명(35.7%)으로 나타났다. 반 년마다 갱신한다는 응답은 3명(21.4%)으로 각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0〉 사전정보공개 갱신주기 제시여부

구분	응답자 수(%)
제시 한다	14(56.0)
제시하지 않는다	11(44.0)
합계	25(100.0)

8) 정보공개모니터단 실시횟수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문조사를 1년에 몇 번 실시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를 1번 진행했다는 응답이 15명(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번 진행했다는 응답은 8명(32%)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번 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1 참고).

〈표 31〉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횟수

구분	응답자 수(%)
연 1회	15(60.0)
연 2회	8(32.0)
연 3회 이상	1(4.0)
실시하지 않는다	1(4.0)
합계	25(100.0)

9) 정보공개모니터단의 필요성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통한 설문조사가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 15명(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25명 중 7명(28%)만이 사전정보공개 제도에 ‘정보공개모니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담당자들은 모니터단이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표 32 참고).

〈표 32〉 정보공개모니터단의 필요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
그렇다	7(28.0)
보통이다	15(60.0)
그렇지 않다	3(12.0)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4.2.4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1) 정보공개청구 전 사전정보공개 활용

이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의 14명(56%)이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5명(20%)으로 동일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5명이 응답하였다.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공개되는 정보량의 부족, 정보의 검색이 불편하여 이용자들이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표 33 참고).

〈표 33〉 이용자의 사전정보공개 활용 정도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1(4.0)
그렇다	5(20.0)
보통이다	14(56.0)
그렇지 않다	5(20.0)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2) 이용의 편리성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메뉴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2명(4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명(12%)이었다. 또한 보통이다의 응답이 8명(32%),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8%)으로 나타났다.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 중 그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에 2명이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홈페이지 메뉴가 복잡하며, 원문정보로 연결된 링크의 오류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4

참고).

〈표 34〉 사전정보공개 이용 편리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3(12.0)
그렇다	12(48.0)
보통이다	8(32.0)
그렇지 않다	2(8.0)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3) 검색의 필요성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의 검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4명(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24%)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5명(20%)보다 약간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20명(80%)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검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없었다(표 35 참고).

〈표 35〉 검색의 필요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6(24.0)
그렇다	14(56.0)
보통이다	5(20.0)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4)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검색의 필요성

정보공개 청구 및 사전정보공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24%),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20%),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12%)으로 나타났다. 즉 17명(68%)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사전정보공개 검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목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의 목적은 공개 청구 및 처리에 있으므로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의 신설에 의해 원문공개시스템이 제공되기 시작하면, 사전정보공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표 36 참고).

〈표 36〉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검색 필요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6(24.0)
그렇다	11(44.0)
보통이다	5(20.0)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3(12.0)
합계	25(100.0)

5) 이용자 요구 파악의 중요성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56%),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36%)으로, 전체적으로 23명(92%)이 사전정보공개에 있어 이용자들의 요구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에의 취지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7 참고).

〈표 37〉 이용자 요구 파악의 중요성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9(36.0)
그렇다	14(56.0)
보통이다	1(4.0)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4.0)
합계	25(100.0)

6) 이용자 요구 파악 경로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문조사 이외에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경로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메일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14명(9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기관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8 참고).

〈표 38〉 이용자 요구 파악 경로

구분	응답자 수(%)
이메일	14(93.3)
전화	1(6.7)
홈페이지 내의 게시판	-
기타	-
합계	13(100.0)

7) 이용자 요구 반영 여부

정보공개모니터단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사전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요구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15명이 응답하였다. 수렴한 내용으로는 링크연결의 오류 수정, 공개하는 정보형태를 동영상, 사진 등으로 확대, 검색 방법의 편의 제공, 홈페이지 메뉴 개선 등이 있었다(표 39 참고).

〈표 39〉 이용자 요구 반영 여부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다	-
그렇다	12(48.0)
보통이다	7(28.0)
그렇지 않다	6(27.3)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25(100.0)

8) 조사결과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정보공개 업무 및 제도 측면에서는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는 기록연구직이 18명(72%), 행정직은 7명(28.0%)으로 기록연구사가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정보공개를 기록연구직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10명(40%),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이 9명(36%)으로 나타났으며, 기록연구직이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은 1명(4%)에 그쳤다. 이는 실제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연구직 중 대다수가 이 업무에 대해 본인이 전담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잘 운영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44%), 보통이라는 응답한 경우가 9명(36%)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3명(12%)으로 일부 있었다. 이는 사전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담당기관의 신설과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의 사전정보공개 범위 구체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 측면에서는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게시기준을 사전에 고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19명(76%)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대상의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은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13명(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먼저 범위를 선정 한 후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는 10명(40%)으로 나타났다. 누가 공개대상 범위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로 선정해야 된다는 응답이 14명(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부서 생산자가 선정해야 된다는 응답은 11명(44%)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개대상 범위 선정자와, 누가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의 선정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록의 갱신주기는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연 1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분기별 11명(44%), 반 년 5명(20%), 일 년 8명(3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의 경우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 반기별로 최소 1회, 즉 1년에 최소 2회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2회 실시를 하는 경우는 8명(32%)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이 사전정보공개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라는 경우가 15명(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통한 사

전정보공개제도의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전정보공개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 전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4명(56%)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사전정보공개에 제공되는 자료인지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직은 쉽게 활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메뉴 및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12명(48%)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보통이라는 응답도 8명(32%)으로 나타나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검색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4.3.1 직급에 따른 인식 비교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직급은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직급에 따라서 사전정보공개의 업무 및 제도, 운영현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40 참고).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한 결과, 직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것은 ‘사전정보공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었다. 즉, 기록연구직의 경우 평균 3.28로 나타났으나 행정직의 경우 평균 4.00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의 경우 기록연구직 보다 해당기관의 사전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직급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이해도, 관심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록연구직과 행정직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 전에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록연구직과 행정직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활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기록연구직과 행정직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와 연관해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도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과 반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40〉 직급에 따른 인식 비교

항목	기록연구직		행정직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이해도	4.56	.511	4.43	.535	.587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관심도	4.22	.732	4.43	.535	.506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4.11	.676	4.29	.756	.580
사전정보공개 운영의 적절성	3.28	.826	4.00	.577	.046*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	4.22	.647	4.43	.535	.462
게시기준에 따른 홈페이지 제공정도	4.17	.857	4.43	.535	.462
청구 전 활용정도	3.00	.767	3.29	.756	.410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	3.56	.856	3.86	.690	.415
기관홈페이지 검색의 필요성	4.00	.767	4.14	.378	.645
정보공개시스템 검색의 필요성	3.67	1.188	3.71	1.380	.932
이용자요구파악 중요성	4.11	.963	4.43	.535	.422
모니터단의 필요성	3.11	.583	3.29	.756	.542
이용자요구 반영정도	3.17	.857	3.43	.787	.491

*p<.05

4.3.2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 비교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근무기간은 1~6년과 7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근무기간에 따라서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업무 및 제도, 운영현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41 참고). 그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한 결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것은 ‘사전정보공개의 필요성’과 ‘기관 홈페이지의 검색 필요성’이었다.

첫째, 사전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1~6년차 응답자가 평균 4.50으로 나타났으며, 7년 이상 응답자는 평균 3.9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1~6년차 응답자가 7년 이상인 응답자 보다 사전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1~6년차 응답자가 평균 4.40으로 나타났으며, 7년 이상 응답자는 평균 3.8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근무기간이 1~6년차인 응답자가 7년 이상인 응답자 보다 사전정보공개의 검색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1~6년차인 경우는 사전정보공개제도의 관심도와 필요성,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7년차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근무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게시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지 묻는 항목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1~6년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 비교

항목	1~6년		7년 이상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이해도	4.50	.527	4.53	.516	.877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관심도	4.40	.699	4.20	.676	.482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4.50	.527	3.93	.704	.041*
사전정보공개 운영의 적절성	3.40	.966	3.53	.743	.700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	4.50	.707	4.13	.707	.147
게시기준에 따른 홈페이지 제공정도	4.20	.919	4.27	.704	.839
청구 전 활용정도	3.10	.994	3.07	.594	.917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	3.50	.707	3.73	.884	.492
기관홈페이지 검색의 필요성	4.40	.516	3.80	.676	.026*
정보공개시스템 검색의 필요성	3.70	1.494	3.67	1.047	.948
이용자요구파악 중요성	4.30	1.252	4.13	.516	.647
모니터단의 필요성	3.20	.632	3.13	.640	.800
이용자요구 수렴정도	3.10	.876	3.13	.816	.503

*p<.05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직책에 따라서 보았을 때, 행정직이 기록연구직 보다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이해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정보공개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은 행정직이 기록연구사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평균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1~6년차인 경우는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이해도, 관심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7년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정보공개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근무기간이 1~6년차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전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6년차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전정보공개의 제도 및 업무, 운영현황, 서비스에 대해서 평균을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평균은 대부분 3.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전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이해도, 관심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적절성의 경우는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으나 실제 잘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정보공개의 운영현황 및 서비스에 대한 항목은 제도에 대한 인식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전에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보공개모니터단’이 사전정보공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의 경우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전정보공개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적음을 알 수 있다.

V.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본 연구는 40개의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제도 및 운영, 서비스 현황과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측면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5.1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측면

1) 정보공개 전담부서의 설치

설문조사결과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은 이 제도에 대하여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고,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당자들은 전체 업무에서의 사전정보공개가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응답자의 과반 수만이 해당 기관에서 사전정보공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이해도, 관심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서 실제 사전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이 업무담당자의 대다수가 기록연구직이었지만 현재의 담당자 중 기록연구직이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기록연구직이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정보공개가 보다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업무와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연구직이 정보공개 담당자일 경우는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해

진다.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고 이곳에서 정보공개청구 업무와 사전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전정보공개는 선정된 정보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용기록의 서비스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정보공개가 기록관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연구직은 주된 업무가 기록관리이므로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주 담당자가 될 경우 전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설문응답자 25명 중 11명(44%)이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개선방안으로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인 ‘정보공개 정책과’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여 맡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정보공개제도 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설치한다면,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사전정보공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홈페이지에 서의 검색제공이나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현용기록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관리직이 지원하는 형태가 될 때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2) 공개대상 정보 및 목록 선정 기준의 표준화

중앙행정기관 40개를 대상으로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 및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전정보공개 제공목록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 기관마다 그 선정 기준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제1항 등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운영규정의 범위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도, 홈페이지에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각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관련 운영규정은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특히 규정을 통하여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제공할 지를 명시해야만 이 업무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정확한 범위선정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공개정보의 범위를 보다 상세히 제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범위를 선정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범위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업무를 중심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서는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선정하여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수립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이를 사전에 수립한다는 응답은 19명(76%)으로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대신 대부분의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게시기준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지만, 업무의 절차 상 운영규정에 게시기준을 정확히 고시한 후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의 선정 기준을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하는 응답자는 1명(4%)에 불과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정보공개 운영에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선정할 때의 방법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로 공개정보의 범위를 선정할 때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현재 업무담당자들은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범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의 선정 기준을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설문결과 정보공개청구 빈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명(4%)에 불과하였다.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운영은 최소 연 2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설문결과 연 2회 이상 운영하였다는 응답자는 8명(3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정보공개의 운영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즉,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기반으로 하여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공개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사전정보공개는 기관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공개정보의 범위 선정을 누가해야 하는지, 주기·시기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운영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사전

정보공개 운영 절차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정보생산자의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의 권장사항 역시 운영규정에 정확히 명시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 절차 및 분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명시한다면 각 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장 없이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5.2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측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명(24%)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용자에게 아직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먼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 응답자 중 15명(15%)이 현재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공개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용자는 찾고자 하는 정보의 정확한 명칭을 알 경우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느 업무에 속하는지 모르거나 정확한 표현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응답 결과에서도 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명(80%), 정보공개시스템에서의 기관전체의 통합검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7명(68%)으로 나타나 검색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 중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급식현황’, ‘어린이집 위반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고 하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청구

하기 전에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관내의 검색과 정보공개시스템에서의 통합검색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는 사전정보공개 메뉴에서 검색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 내 통합검색을 이용하면 사전정보공개의 내용이 아닌 다른 자료들과 같이 검색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를 통합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잘 검색되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보공개법」 제8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가 2014년 3월부터 시행되어 ‘공개’로 분류된 모든 기록이 사전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하는 정보가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에 사전정보공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정보목록에서 제공하는 원문공개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전정보공개 목록과 정보목록을 통합해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 키워드검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검색의 접근점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기관, 포맷, 주제별, 키워드 등 범주를 구체화 시켜서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정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규정 및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공개정보 범위선정 및 사전정보공개목록의 기준,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전정보공개 목록기준, 홈페이지 서비스, 총 3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공공기관에서는 사전정보 공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관 내부의 정보공개운영규정 및 지침에 공개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방법에 대한 사전 고시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고시의 내용과 실제 공개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사전정보공개 관련 명칭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키워드 검색과 링크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분석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정보공개 업무 운영 측면의 문제점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의 사전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현재 사전정보공개 업무는 주로 기록연구직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주체가 기록연구직이 아니라 행정직 또는 행정직과 기록연구직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정보공개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와 사전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사전정보공개 업무 중 현용기록의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연구직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전정보공개 운영 측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전정보공개 범위 선정 방법과 그 범위를 선정하는 담당자의 문제이다. 사전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규정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제시된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아니라 그 이전의 법률 및 훈령에 근거하여 게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개별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선정하고 있으나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은 개별부서와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함께 조율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정보공개의 운영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절차 특히 「정보공개법 시행령」 혹은 그보다 더 상세한 범위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범위선정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전에 사전정보공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사전공개된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 중 이용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목록과 정보공개목록을 통합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사전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40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분석하고 이 중 25개 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하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1.
- 김유승, 전진한. (2011).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47-66.
- 김정화. (2003).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완. (2000). 『한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영. (2006). 『공공기관 자료관의 정보공개 운영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범섭. (2010). 『뉴거버넌스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운. (2011).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 안은정. (2013).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경남교육행정공무원의 인식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전행정부. (2013). 『2012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안전행정부.
- 양정봉. (2006). 『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미. (2000).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광석. (2010).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 이보람. (2012).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77-201.
- 임진수. (2005).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표기준분석』.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희. (2009). 『설명책임 매커니즘을 통한 공공기관 업무정보의 추구 및 제공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진한. (2007). 『참여정부 정보공개정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공개위크숍. (2013). 『정보소통·공유: 지방정부 3.0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서울특별시.
- 행정안전부. (2004). 『2004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11). 『정보공개운영매뉴얼』. 서울: 행정안전부.

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3.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2.5.31.)
-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2003.6.24.)

3. 참고사이트

국토교통부 사전정보공개. 검색일자: 2013. 7. 20. http://www.molit.go.kr/USR/PublicInfo/m_35388/lst.jsp

공공정보 통합 포털 사이트. 검색일자: 2013. 12. 15. <http://DATA.GOV.UK>

미국 연방정부 데이터 통합 저장소. 검색일자: 2013. 12. 15. <http://DATA.GOV>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표. 검색일자: 2013. 12. 15. <http://opengov.seoul.go.kr/public.list>

알리오. 검색일자: 2013. 12. 15. <http://www.alio.go.kr>

정보공개시스템. 검색일자: 2013. 7. 20. <http://open.go.kr>

정부3.0. 검색일자: 2013. 10. 5. <http://gov30.go.kr>

〈부 록 1〉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조 - 제12조 생략)

제13조 (사전정보 공표)

-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6〉

(제14조 - 제25조 생략)

2011.11.16. 일부개정

〈부 록 2〉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위원회 의결사항
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
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6. 각종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 내용
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7조 (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 (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 - 제17조 생략)

2012.6.27. 일부개정

〈부 록 3〉 - 관세청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 (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정보공표 등)

- ① 사전정보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가·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가·시기 및 방법 등을 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실·국장(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포함. 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및 본부세관장은 제12조제1항에 의해 구축된 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관보 등에 게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방에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사전정보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방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보를 관리하는 본청 실·국장, 본부세관장 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당해 정보의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1회이상 분석하여 연간 5회이상 공개된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전정보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 - 제14조 생략)

2013.8.12. 일부개정

관세청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의 [별표2]

□ 일반행정분야(12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홍 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	수시	대변인실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	수시	대변인실
회 계	업무추진비/ 공용차량 현황	업무추진비/ 공용차량 현황	분기1회	1,4,7,10월20일	운영지원과
일반서무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부	-	수시	운영지원과
인 사	인사발령	전 출입, 파견에 관한사항	-	수시	기획조정관실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계획	연1회	2월15일	기획조정관실
	국정과제	추진현황	-	수시	기획조정관실
청장연설 /기고	언론 기고문	기고문	-	수시	대변인실
정부업무 평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연2회	7,12월20일	기획조정관실
법령	각종 법령 및 고시	고시	-	수시	기획조정관실
감사	감사계획	연간 계획서	연1회	연초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	자체계획 및 결과 보고	-	수시	감사담당관실

□ 수출입통관분야(14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수출입 화물	통관정보 (수입화물진행정보)	물품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HS 품목분류검색	물품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HS 품목분류별 목록조회	물품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수출입	등록업체	업체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수출입화물 통계정보	통계	-	수시	통관지원국
	보세운송정보	물품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입출항	입출항하선(기) 적재정보	물품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여행자 통관	여행자통관분야 고시 등 개정	개정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휴대품 통관정보	안내정보	-	수시	통관지원국
우편물	우편물통관결과조회	통관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간이통관	간이통관분야고시 등 규정개정	개정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남북교역	남북 출입차량 고시 개정	개정내역	-	수시	통관지원국
통 계	월별 수출입동향	월별통계	월1회		통관지원국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	수입가격동향	월1회		통관지원국

□ 징수·환급분야(9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징 수	관세 등 징수실적	세종별 통계	분기	1,4,7,10월 25일	심사정책국
	채납현황 및 사후납부현황	연도별 현황	분기		심사정책국
	사후관리업무	사후관리통계	분기		심사정책국
환 급	관세환급	환급실적 (연도·환급방법별)	분기	1,4,7,10월25일	심사정책국
	관세환급금 지급은행 현황	지급은행 현황	-	수시	심사정책국
	소요량산정 사례 및 응답자료	사례 응답자료	-	수시	심사정책국
	간이정액환급율표	HSK10단위별 간이정액환급액	연1회	1월25일	심사정책국
질의사례 등	고객지원센터 질의 응답	사례공개	분기1회		심사정책국
	고액채납자명단	명단 공개		수시	심사정책국

□ 심사·평가분야(10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심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변동내역	-	수시	심사정책국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연2회	지급 후	심사정책국
기획심사	기획심사 관련 법령 개정	개정내역	-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평가	평가관련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례	-	수시	심사정책국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	기준비율표	-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평가관련 고시개정	개정내용	개정시	수시	심사정책국
덤핑방지관 세	덤핑방지관세 부과 지시	지시내용	-	수시	심사정책국
종합심사	종합심사 관련 법령 개정	개정내역	-	수시	심사정책국
	종합심사 관련 자율심사 매뉴얼	매뉴얼	개정시		심사정책국
회의	AEO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신규공인업체명단및 기존공인업체명단	-	수시	심사정책국

□ 품목분류·분석분야(2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품목분류	품목분류 실무위원회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품명, 물품설명, 경합세번, 결정세번	-	수시	심사정책국
	관세율	관세율	-	수시	심사정책국

□ 조사·감시분야(12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일반조사	명예세관원 활동	활동실적 (사례)	-	수시	조사감시국
	수요급증시기 밀수 집중단속 계획	단속목적 · 기간	-	수시	조사감시국
위조상표	가짜상품 식별요령	식별요령	-	수시	조사감시국
외환조사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마약조사	마약 검거실적	월별,연간 통계	월1회	익월15일	조사감시국
	마약탐지견 운영	탐지견 종류, 탐지견센터 연혁	-	수시	조사감시국
항만감시	장비도입 예산	사업별 예산내역	-	수시	조사감시국
	감시장비 도입	구매제안요청서	-	수시	조사감시국
	항만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제안요청서	-	수시	조사감시국
통계	관세사범 단속통계	관세사범유형별 통계/품목별통계 /적출국별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지식재산권사범 단속통계	지식재산권사범 유형별 통계/품목별통계/적출국 별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대외무역사범 단속통계	대외무역사범 유형별통계/품목별 통계/적출국별통계	월1회		조사감시국

□ 전산분야(4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정보화	정보화 예산	정보화사업 예산	연1회	1월25일	정보협력국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및 감리 제안요청서	-		정보협력국
	민원업무 전산화	민원업무처리절차, 시스템개발일정	-	수시	정보협력국
연수	개도국 세관 직원연수실적	나라별 세관직원 연수 참가인원 통계	반기		정보협력국

□ 국제협력분야(4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국제협력	외국세관과의협력회의	회의자료	-	수시	정보협력국
	해외통관정보	해외통관편람등	-	수시	정보협력국
	국제기구(WCO, WTO, APEC, ASEM, OECD 등) 자료	협약, 논의동향, 국제기구제출자료, 해외관세뉴스 등	-	수시	정보협력국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수시	정보협력국

□ FTA집행기획담당관(4종)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FTA	원산지 기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수입시 세율	수입물품의 협정별 세관	-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FTA 수출시 세율	수출품목의 협정별 세율	-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서식	협정별 C/O서식	-	수시	FTA집행기획담당관

〈부 록 4〉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김혜원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를 위한 것입니다. 사전정보공개 업무현황과 이 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술적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설문지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연구자 : 김혜원

지도교수 : 정경희

【사전정보공개 업무】

1. 선생님께서 사전정보공개 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업무 내용	해당 사항
정보 공개의 범위 선정	
정보 공개의 범위 선정 후 해당 정보의 선별	
정보 공개의 주기 및 시기 선정	
정보 공개의 방법 선정	
기관 정보공개운영 규정 및 지침에 고시를 위한 훈령 및 예규 작성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정보공개 제공	
원문 정보로의 링크 연결	
링크 정보의 적합성 체크	
이용자의 요구수렴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2. 선생님의 전체 업무 중에서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10% 이하 ② 11% ~ 20% ③ 21% ~ 30%
④ 31% ~ 40% ⑤ 40% 이상

3. 선생님의 전체 업무 중에서 사전정보공개 업무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사전정보공개제도가 누구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록연구직 ② 행정직(정보공개담당자) ③ 기록연구직과 행정직의 분담
④ 기타()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담당자 인식】

번 호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선생님께서서는 사전정보공개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6	선생님께서서는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까?	⑤	④	③	②	①
7	선생님께서서는 사전정보공개가 이용자들에게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8	현재 선생님께서 속한 기관의 사전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④	③	②	①

9. 사전정보공개제도가 어떤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 ①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에서의 사전정보공개 범위 구체화
- ②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및 정보생산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 ③ 정보공개 전담부서 신설
- ④ 사전정보공개의 홍보 확대
- ⑤ 기타 ()

【사전정보공개 운영 현황】

10. 귀 기관에서는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내부 지침 및 규정에 고시를 하십니까?

- ① 그렇다(11번으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10-1로 이동)

10-1. 내부 지침 및 규정에 고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 공개대상의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 ①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선정
- ②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 ③ 사전정보공개 담당자가 먼저 범위를 선정한 후, 부서와의 의견을 조율함
- ④ 기관의 기존 정보공개 운영 지침 및 규정을 따름
- ⑤ 기타 ()

12. 공개대상 범위를 누가 정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 ② 각 부서 생산자
- ③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와 부서와의 의견 조율
- ④ 기타 ()

13. 공개대상의 범위 선정 후에 사전공개 정보의 선별은 누가합니까?

- ① 사전정보공개 담당자 ② 각 부서의 정보 생산자
- ③ 기타 ()

14.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4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정보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
- ② 기관의 핵심 업무 관련 정보
- ③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 ④ 기관 홈페이지 검색 빈도수가 높은 정보
- ⑤ 기타 ()

15. 정보공개에의 주기 및 시기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① 공개 정보의 생산시기 기준
- ②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따라 임의로 정함

- ③ 사전정보공개 담당자의 편익에 따라
- ④ 기타 ()

16.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있습니까?

- ① 분기별
- ② 반 년
- ③ 일 년
- ④ 일 년 이상
- ⑤ 하지 않는다

17. 내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사전정보공개의 공표목록 갱신주기를 정하고 있습니까?

예)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① 그렇다(17-1번으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17-3로 이동)

17-1.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해진 갱신주기에 따라서 갱신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18번으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17-2번으로 이동)

17-2. 규정 및 지침의 갱신주기를 기준으로 갱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3. 내부 규정 및 지침에 갱신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8. 선생님의 기관에서는 ‘정보공개모니터단’을 1년에 몇 번 실시하십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그 이상 ⑤ 하지 않는다

19. ‘정보공개모니터단’이 사전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20.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청구 전에 사전정보공개를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21-1로 이동)
- ⑤ 전혀 그렇지 않다(20-1로 이동)

20-1.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전정보공개 의 홍보가 부족함
- ②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함
- ③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함
- ④ 검색이 불편함
- ⑤ 기타 ()

21. 귀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21-1로 이동)
- ⑤ 전혀 그렇지 않다(21-1로 이동)

21-1. 사전정보공개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홈페이지 메뉴의 복잡함
- ②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③ 링크연결의 오류
- ④ 검색의 오류
- ⑤ 기타 ()

22.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개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22-1로 이동)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1로 이동)

22-1.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사전정보공개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23-1로 이동)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1로 이동)

23-1.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

24. 이용자들의 요구 파악이 사전정보공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5. 선생님의 기관에서는 ‘정보공개모니터단’ 이외의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25-1 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26번으로 이동)

25-1. 이용자 요구 파악의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홈페이지 내의 게시판
② 전화
③ 이메일
④ 기타 ()

26. 이용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26-1이동) ② 그렇다(26-1이동) ③ 보통이다(26-1이동)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6-1. 어떤 요구를 반영하였습니까?

()

【인적 사항】

27.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28. 선생님의 연령을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9. 현재 기관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다?

- ① 1 ~ 2년
② 3 ~ 4년
③ 5 ~ 6년
④ 7 ~ 8년
⑤ 8년 이상

30. 선생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기록연구직 ② 행정직 ③ 전산직 ④ 기타

31. 선생님께서는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겸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and Services for the Proactive Disclosure: Focused on the Staffs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Kim, Hye-Wo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on and service state of the proactive disclosure a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opose some improvement measures.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conducted literature study to trace the introduction and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and analyzed its current opera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and homepages of 4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 survey was carried out on the operation and service of the system with the staffs in charge of proactive disclosure at 4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questionnaire return rate was 62.5%(25 staffs).

For the current state at the 40 agencie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riteria to set the disclosure scope in the operational regula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at each agency.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riteria of proactive disclosure lists at the homepages of the agencies. Third, the study examined the usage of designations related to the homepage service,

provision of link connections, and provision of research results and found that each agency put the criteria of scope setting and public announcement lists to various uses including Freedom of Information Act, its enforcement ordinances, Information Disclosure Guidelines, jobs and departments. The designations of the proactive disclosure varied among the homepages of those agencies. Most of them provided a link for information, but some of them were accompanied by connection errors.

The questionnaire items concerned the proactive disclosure and its affairs, operation, and service.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mmarized the identified problem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jobs and institution of proactive disclosure, most of the staffs currently in charge of proactive disclosure belonged to the category of records research, and a majority of them thought that proactive disclosure was not in the job description of records researcher. The subjects showed an overall high perception level of understanding, interest and need for the proactive disclosure, bu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believed that proactive disclosure was going well was relatively low.

The ways the scope of information to be made public in advance were set varied among the agencies. Article 4,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escribes a set of criteria to choose the information to be made public in advance, but very few agencies adopted those criteria. "Operational Manual for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ularly recommends that a public agency should choose the information of high frequency for information disclosure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of "information decided by the head of agency," but only one respondent(4%) mentioned the criterion. While it is recommended that a "monitoring group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formed at least twice per year, only nine respondents(36%) said that their agencies followed the recommendation. Secondly, as for the service of proactive disclosure, only six respondents(24%) believed that users made use of proactive disclosure before

submitting an information disclosure application. Many respondents said that homepages should offer search service.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help to resolve those issues:

First, a new department devo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jobs should be set up to supervise the jobs of proactive disclosure and allow records researchers to support the affairs related to the current records service. Secondly, each agency should clearly include the operational procedure of proactive disclosure in its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for coherent job performance. They should also clearly state the specific job processes and division of works and run the proactive disclosure based on them. Finally, promotions should be centered around the types of open information in which users take interest. It is also needed to integrate the proactive disclosure list wi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lists and offer search service at the homepage and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of each agency to facilitate user access to open information.

【Keywords】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oactive Disclosur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 of Proactive Disclosure, staffs in charge of Proactive Disclosure